



독일 오스트리아만 97년 이후 가능할 듯

EU농약등록규정 회원국 대부분 시행

조사홍보부

거의 모든 EU회원국들은
EU농약등록규정(Directive
91/414)을 시행중에 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만은 예외로 1997년 이전에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grow〉의 최근 보고서는 금년초에
참여한 EC 새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도 이 규정의 시행주진에
전전이 있었다고 했다. EU 각국의 이 규정
시행현황을 간략히 알아본다.

오스트리아

빠르면 1996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주무 장관은 국내법에 이 규정을 반영할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 규정으로 제품의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벨지음

이 규정을 1994년 2월 28일 승인하고, 그해 5월 11일 관보(Moniteur Belge)에 고시했다.

덴마크

1992년 12월 이 규정을 통과시켜 199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 최초의 회원국이다.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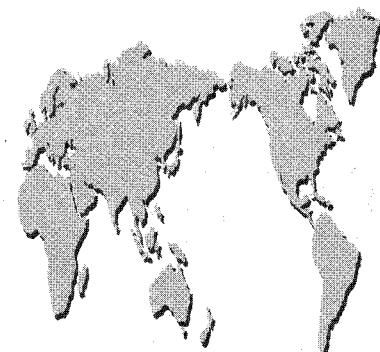
기존 식물방역법 1204/94의 수정안이 1995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했고 농약법 792/95가 1995년 5월 24일 안전으로 제기됐다. EU등록자료요건(Annex II, III)에 대한 개정규칙을 자국어로 번역, 자료요건과 라벨링 관련사항이 금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EU등록이 국내농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다른 EU국가와 가격 경쟁으로 앞으로는 농약을 제조하기 보다는 판매만 해야될 것으로 일부는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

관련규정이 1994년 12월 23일에 발표되었으며 주무 장관이 이 규정을 시행할 두 가지 법령에 서명하여 1995년 5월 프랑스법에 반영되었으나 등록자료요건 등에 대한 개정규칙은 아직 프랑스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독일

독일은 이 규정을 이행하는 마지막 회원국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997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무부와 환경부가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5년 내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법의 대부분이 EU등록자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스

현재 등록초안이 마무리되었으며 농무부의 조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그리스 당국은 이 규정이 금년말까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아일랜드

1994년 10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태리

시행 절차를 마무리하여 이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1995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5월27일자 관보 (Gazzeta ufficiale)에 고시했다.

룩셈부르크

이 규정은 일부 부속서만 제외하고 1994년 12월 국내법에 반영됐다. EU가 채택한 개정규칙(등록자료 요건등)은 아직 룩셈부르크 관보에 고시되지 않았다 (내년내로 기대).

네덜란드

이 규정은 네덜란드농약법(BMW)으로 개정 시행되고 1995년 2월27일 독일 관보에 발표됐다. 새 법

(RTBM)은 1995년 3월1일에 효력이 발생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재등록, 비용, 환경요건 등이다.

포르투갈

이 규정을 국내법에 적용한다는 규정(법률 284/94)이 1994년 11월11일 관보에 고시됐다. 시행규칙(시행규칙 563/95)은 1995년 6월 12일 관보에 발표됐고 규격제정비용(서행규칙 413/95)의제가 1995년 5월8일 제출됐다.

스페인

1994년 11월 4일(No. 2163)Royal Decree로 국내법에 적용되었다. 관보(Boletin Oficial del Estado)에 고시됐고 94년 9월20일자의 개정규칙도 그해 10월4일 고시됐다.

스웨덴

1995년 1월1일 EU가입과 함께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승인했다.

영국

관련법안이 1995년 3월27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7일 승인됐다. **농약정보**